

특허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 개정 이유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별첨1 참조)의 공포('18.4.17.)에 따라, 개정 특허법의 시행('18.7.18.)과 관련된 하위법령(특허법 시행령) 개정 필요

□ 개정 내용

◆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평가·관리 전담기관 지정 규정 신설(제8조의5 신설)

- * (전문기관 업무) 특허청장이 특허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업무

- 선행기술조사 업무의 특수성과 평가·관리 업무의 전문성,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전담기관은 특허청 산하기관 중 지정 필요(별첨2 참조)

- (특수성) 특허심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바탕이 되어야하므로 특허정보진흥센터*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적합

- *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특허정보진흥센터와 진흥센터 모기관인 특허정보원은 공정성 측면에서 부적합

-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권리범위판단, 특허요건 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IP-R&D 사업 등을 수행 중

- (전문성) 정부사업의 평가 및 관리 경험이 많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평가·관리 업무의 전문성 측면에서 적합

- (공공성) 특허청 산하기관 중 유일한 준정부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평가·관리 업무의 공공성 측면에서 적합

⇒ 전담기관으로 가장 적합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시행령에서 지정

- * 전담기관 역할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17.12)에서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전담기관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

- ** 다만, 유사 입법례(별첨3 참조)를 참고하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외의 다른 기관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보안체계 등 전담기관 요건 규정

- 평가·관리 전담인력과 조직 확보 및 미공개 출원 등을 다루기 위한 보안요건 필요

* 전담인력 및 보안요건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과 동일하게 규정

○ 전담기관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로 위임

-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환경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요건 및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요건 등에 대한 세부사항도 고시로 위임 중

<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5(안) >

현 행	개정안
<u><신 설></u>	제8조의5(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①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2. 그 밖에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보안체계를 갖춘 기관으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조직·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및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정 효과

- 법률 개정 사항 반영을 통한 하위법령 규정 명확화

< 개정 특허법 제58조 >

현 행	일부개정법률(18.7.18. 시행)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특허청장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할 때 필요하거나 특허출원을 심사(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포함한다)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미생물의 기탁·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특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첨2

특허청 산하기관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기관명	설립목적	주요기능
한국 특허전략 개발원	○ R&D 쉼 주기에 대한 지식재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 ○ 지식재산 연계(IP-R&D) 사업을 통해 R&D 성과를 극대화	○ IP-R&D 관련 정책개발, 기획, 성과분석 ○ 민간 IP-R&D 전략 지원 ○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 ○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 ○ 유망 특허 발굴 및 특허 사업화 지원
한국발명 진흥회	○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 ○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수행	○ 발명진흥, 산업재산권에 대한 연구 및 건의활동 ○ 학생발명 활동의 촉진과 장학사업 ○ 발명가의 양성 보호 육성 ○ 국내 외 발명전시회 개최 및 참가 지원 ○ 특허기술평가에 관한 사업
한국 지식재산 연구원	○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 수립 ○ 지식재산권 동향 분석 ○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	○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 지식재산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의 파견 ○ 지식재산 관련 교육 및 출판
한국 지식재산 보호원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조성 ○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구축 ○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의 제언 ○ 국내 위조상품 단속활동 지원 등 지재권 보호 ○ 해외 진출 기업의 지재권 피해에 대한 보호 ○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의 지원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한국특허 정보원	○ 산업계, 연구소, 학계 등에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정보화하고 보급	○ 산업재산권 정보의 가공 및 보급 사업 ○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 사업 ○ 특허넷 운영위탁사업 ○ 특허문서전자화 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운영 사업
특허정보 진흥센터	○ 산업계, 연구소, 학계 등에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 등을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제공	○ 특허 선행기술조사 사업 ○ 특허분류 부여 사업 ○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사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14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진흥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전문개정 2009.4.30.]

제14조의2(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 수요 조사 및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협약 체결과 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성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09.4.30.]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2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①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업무를 위하여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운영체계, 사업신청 절차 및 선정절차, 지원 범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7.9.10., 2009.7.27., 2017.7.26.>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삭제 <2006.12.2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전담기관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7조의8(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및 개선 권고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감독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감독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법령의 준수 여부 관리·감독
2.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분석
3. 법 제24조의4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개선권고 업무의 지원 및 그 결과의 접수·처리 업무의 지원

[본조신설 2012.11.12.]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특허법 시행령 >

제8조의2(선행기술 조사 등에 관한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하 "조사·분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분류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문헌 및 장비를 확보할 것

2.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같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고 휴업 중에 있는 변리사는 제외한다)가 없을 것

4.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조사·분류 전문기관이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같은 항 각 호의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분류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헌, 장비 및 인력·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조사·분류 전문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입법례1]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14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진흥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전문개정 2009.4.30.]

제14조의2(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 수요 조사 및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협약 체결과 사업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성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09.4.30.]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시행 2017.9.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2호, 2017.9.1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6

제11조(전담기관) ① 장관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등 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인증·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신규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특허, 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본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입법례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집행계획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촉진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4.12.]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2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①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업무를 위하여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운영체계, 사업신청 절차 및 선정절차, 지원 범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입법례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제19조(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사업
2.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3.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지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7.9.10., 2009.7.27., 2017.7.26.>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4. 삭제 <2006.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전담기관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

[시행 2007.1.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5호, 2007.1.10, 일부개정]

제3조(전담기관) ① 중소기업청장은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성을 평가하는 부합화 지원사업(이하 "인증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지도 및 상담지원사업(이하 "지도사업"이라 한다)
3.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이하 "연수사업"이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략)

제4장 보 칙

제1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한다.

□ [입법례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제24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타법개정]

제17조의8(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및 개선 권고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감독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감독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법령의 준수 여부 관리·감독
2.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분석
3. 법 제24조의4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개선권고 업무의 지원 및 그 결과의 접수·처리 업무의 지원

[본조신설 2012.11.12.]

<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정보관리 및 관리감독 전문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16.4.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45호, 2016.4.2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02-2110-183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5항 및 제24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8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수집·분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을 위한 "관리감독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각각 지정한다.

□ [입법례5]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그에 대한 지원
 2.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통·전시·홍보 및 그 지원
 3.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4. 우수공예품의 지정
 5. 공예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표준화
 6.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시행 2015.12.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39호, 2015.12.1.,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53

기관 명칭	주 소	연락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5층	☎ 02-398-7900 www.kcdf.kr

부칙 부 칙 <제2015-39호, 2015.12.1.>

제1조(시행일)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일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동 전담기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1일까지로 한다.